
2020 윤리감사 보고서

2021. 02. 26



감 사 실

목 차

I. 윤리감사 개요	1
① 감사실시 근거	1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1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1
II. 항목별 추진실적	2
① 제13조(윤리행동강령)	2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6
③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7
④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9
⑤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12
⑥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14
III. 2021년도 윤리감사 계획	16
붙임 : 2020년도 자체감사 실적	18

① 감사실시 근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원전감독법’, 제정 2014.12.30., 시행 2015.07.01)
- 공공기관 감사 : 윤리감사 시행 후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의무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 「원전감독법」 제19조(윤리감사)에 따라 감사는 제13조~제18조의 임직원·협력업체의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정기/수시 감사 보고
-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 내용

대 상	준 수 내 용
(제13조) 윤리행동강령	▶ 윤리행동강령의 제정 및 공개, 준수 여부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이행 여부
(제15조) 임직원의 취업 제한	▶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기관 취업 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위반 여부
(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 사적이익 추구 및 특혜 목적의 정보제공·이용 금지 위반 여부
(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	▶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	▶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뇌물 등 공여, 부당한 원전 정보 취득 및 이용, 품질 문서 위변조 등) 위반 여부 및 후속 조치(등록취소/입찰 제한) 적정성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 윤리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제13조(윤리행동강령)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에 의거,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 의무화

「원전감독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유관 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명시

나.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5조)차별대우 금지 (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6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6조의4)채직 중 취업청탁 제한 (6조의5) 외부고객 방문시 청탁물품 사전차단 조치 (7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9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1조)가족 채용 제한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8조)퇴직자의 취업 제한 등 (19조)공용 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3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24조)금품 등 제공 금지 (2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6조)협력업체 대상 윤리 행동기준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2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28조)투명한 회계처리 (29조)정보의 유출 금지 (30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제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구성	(31조)외부강의등의 신고 (31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31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3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33조)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 (3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3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36조)성범죄 행위 금지 (36조의2) 음주운전 금지
제6장 위반시의 조치	(3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3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39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심의회 (40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라.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9회 시행

점검 내용	점검 항목	점검 기간	조치 내용
연말연시 공직복무기강 특별감사	- 청탁금지법 위반 등 임직원윤리행동강령	`19.12.19 ~ `20.01.27	▸ 위반사항 없음
하계 휴가철 직할부서 및 경영관리본부 공직 기강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0.07.23 ~ `20.07.31	▸ 위반사항 없음
법인카드 규정 관리실태 특정감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년간 유가증권 구매현황 점검 등 임직원윤리행동강령	`20.07.27 ~ `20.07.31	▸ 위반사항 없음 ▸ 제도개선 5건 등
법인카드 사용실태 관련 특정감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용실태 등 임직원윤리행동강령	`20.08.03 ~ `20.08.07	▸ 위반사항 없음 ▸ 권고 2건 등
에너지신사업본부 및 원자로설계개발단 공직기강 및 보안준수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0.08.10 ~ `20.08.21	▸ 위반사항 없음
취약시기 직할부서 및 경영관리본부 공직기강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0.09.17 ~ `20.09.25	▸ 위반사항 없음
하도급사 부패 취약분야 점검 특정감사	- 임직원의 하도급사로부터의 금품수수, 편의 제공, 인사청탁 등 위반사항	`20.10.26 ~ `20.10.30	▸ 위반사항 없음 ▸ 권고 1건 등
하반기 공직기강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0.11.12 ~ `20.11.18	▸ 위반사항 없음
연말 공직기강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0.12.16 ~ `20.12.23	▸ 위반사항 없음

*상기 ‘조치 내용’ 의 ‘위반사항 없음’ : 행동강령 위반사항인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없음을 표기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가. 관련법령

- 「원전감독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에 의거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

「원전감독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등에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 명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 임원 → 2직급 이상으로 확대(2014.07.01)

나. 2020년도 재산등록 시행 현황

- 2020년 정기재산 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직자윤리법」 재산 신고 심사 결과 4명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3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에 의거 재산등록 대상인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 관련 기관에 퇴직 일로부터 3년간 취업 제한(취업 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준용)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적격심사 시 2직급 이상 퇴직자 영입확인서 의무 징구 여부
- 취업 제한 담당 부서의 취업 제한 관련 교육 및 안내 시행 여부

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협력업체 적격심사 시 관련 규정에 의거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확인서’ 의무 징구 : 시행 중
 - 2020년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 협력업체 : 없음
 - 관련 규정 : 용역적격심사기준 제4조 3항, 공사적격심사기준 제2조 5항

□ 2020년도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여부 심사 결과

○ 취업 제한 여부 심사 2건

- 2020.02월, 주임급(2급) : 취업 가능

- 2020.12월, 주임급(2급) : 취업 가능

○ 임의취업 일제 조사 점검(2020.02월/10월)

- 취업 사실 미신고자 2명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취업 사실 신고서)

□ 취업 제한 제도 교육 시행(총 3회)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2020.06월	2020년 상반기 주임급 이상 퇴직자(15명)	공직자윤리법 관련 취업제한제도 주요 내용 및 절차 안내
2020.11월	정년퇴직 2년 전 예정자(41명)	
2020.12월	2020년 하반기 주임급 이상 퇴직자(12명)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시행(총 1회)

○ 2020.01.31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게시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개정

○ 2015.06.08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 2019.05.20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4차 개정

* 사내 포탈 행정사항 게시 중(2019.05.20~)

4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유

-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에 의거,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전력기술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임직원이 회사의 기밀누설, 직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취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제15조(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 ① 직원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주요 감사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점검(연중)
- 정보관리 취약요소 지속 점검(상시감사 모니터링/자체 감찰 : 수시)
 - 점검 내용 : 문서보안, 정보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

신고 접수 건 : 없음

□ 정보관리 점검 사항

점검명칭	점검기간	점검 내용	조치
내부 보안감사	`20.11.09 ~ `20.12.15	기술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생활 보안 준수 여부 확인	▶ 부서별 취약항목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 징구 및 조치 여부 확인
	`20.01.02 ~ `20.12.31	업무용 단말기의 공유폴더 사용위반 및 네트워크 취약포트 사용 등 관제 점검	▶ 공유폴더 사용 위반자에 대해 정보보안위규확인서 징구 및 벌점 부과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불시 보안점검	`20.01.01 ~ `20.12.31	문서방치, 이면지 사용, 캐비닛/서랍 미시건, 저장매체 방치, 보안점검표 확인 등 일반보안 준수 여부 점검	▶ 일반보안 위반자에 대해 정보보안위규확인서 징구 및 벌점 부과
용역수행 업체 보안감사	`20.05.12 ~ `20.05.22	용역수행업체를 통한 설계문서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보안 활동 및 인식 수준 점검	▶ 용역수행업체 직원들의 생활 보안 수준 점검 강화 및 내·외부 직원에 대한 보안 각서 징구 및 보관 권고 ▶ 일부 용역 수행사의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 미준수 (전산장비 반출입시, 파기시), 문서보안미흡(시건장치 캐비닛 미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부 업체에서 자체 보안점검 미 실시, 출입관리대장 관리 미흡 등 보안 활동에 대한 개선 권고
--	--	--	---

□ 회사 중요자료 접근 통제, 보안 강화 조치 시행

- 원자로 계통설계 전산화 시스템 적용·운영
- 도면 및 설계문서 관리시스템 적용·운영
-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적용·운영
- 사이버보안관제실을 통한 자체 보안 관제 실시(2017.01 ~ 현재)
- 대외 보안감사 수검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 산업부 특별보안 감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등)

- 내부 보안감사 실시 : 연간 1회 이상(연 1회)
- 불시 보안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실시)
- 협력업체 보안감사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연 1회)
- 기술자료 이용 이력 관제 시스템 운영(2020년)
 - 특이 접속자 검출 후 사업 PM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 재직자 228건 및 퇴직예정자 295건 통보 및 부정 사용 사항 등 검토

검토 결과	• 재직자 161건 : 이상 없음 / 67건 : 검토 중*
	• 퇴직예정자 295건 : 이상 없음

*상기 '검토 중' 은 해당 사유 등록·부서장 확인·보안 검토 등 검토 절차 진행중 사항

5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하도록 명시

「원전감독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호 및 제3호 생략 …)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 「정관」, 「취업규칙」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등에 영리 업무 금지사항을 명시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행위(휴직 중 포함)

「취업규칙」 제13조(회사 업무에 종사)

직원이 취업기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임직원의 영리 행위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 다양한 탐지 채널을 활성화하여 운영
 - 회사 신고시스템(신문고/레드휘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 인사담당부서의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관련 업무 수행현황 및 영리 행위 금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 여부 등 점검

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원전감독법」 제17조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접수 건 : 없음
- 「원전감독법」 제17조 2항 점검 (2020.03월)
 - 점검 대상 : 2직급(주임급) 이상의 조달 분야 업무수행자
 - 점검 결과 : 이상 없음
- 정규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2020.12.16)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 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1/4/7/10월)
- 회사업무 외 종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전 협조 승인

회사업무 외 종사	2020년 승인 건수
대학 출강 승인(인사노무처 승인일 기준)	2건

※ 겸직 신청 및 허가 내역

겸직 신청 사항	2020년 승인 건수
사외이사 등 외부위원 위촉 승인(인사노무처 승인일 기준)	9건

6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에 협력업체의 뇌물공여 등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행위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

「원전감독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행동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13.06.2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4조(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한전기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검찰 기소 및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을 활성화
- 협력업체 등록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여부
- 협력업체 점검을 통한 청렴 및 윤리실태 조사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 없음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건수 : 없음
- 협력업체 등록 시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2020년도 징구 현황
 - 협력약정업체 자격갱신 심사 결과 적격업체 : 3개 업체
 - 수시모집 선정 및 협력약정 체결업체 : 9개 업체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준수 안내 활동
 - 협력업체제도 관련 사항 안내 공문 발송(2020.09월)
- 협력업체 부패 취약분야 비대면 점검(2020.10월)
 - 협력업체 대상 반부패청렴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부패 사실 조사
 - 감사실 직통 신고 QR코드 배포를 통한 부패 신고 채널 구축
 - 점검 결과
 - 부패 사실 : 없음
 - 협력업체 관련 교육 강화, 계약 규정 개선 등 실시

1 2021년도 윤리감사 추진방향

- 청렴윤리 제도 인식 개선 및 교육으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원전감독법」 직원 이해도 제고 (정기적 사내 게시, 전사 교육 등)
 - 전직원 대상 생애주기별 청렴윤리 교육
 - 사내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청렴윤리 제도 적기 점검을 통한 규정 현행화·체계화
 - 「원전감독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관련 법·제도 개정 사항 정기점검 및 사규 적기 반영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사규 내 부패 유발요인 제거
- 컨설팅 감사 활동 활성화로 비위행위 예방
 - 선제적 사전컨설팅을 위한 업무 규제 요인 발굴
 - 설계, 보안 등 전문분야 중심의 컨설팅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예방 사전 감사를 통한 컨설팅
 -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확대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안 분야 감사 활동 강화
 - 설계용역 보안관리 실태 감사
 - 원격 및 재택근무 보안 취약분야 점검, 전산망 이용 관리 등 점검
 - 비대면 업무 활동 증가에 대한 업무실태 감사
 - 현장 원격감사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2 2021년도 주요 감사계획

□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통한 윤리감사 사항 점검

구 분		감사 사항	수행팀	일정(월)
종합 감사		국내 현장사무소 종합감사	종합감사팀	7, 10
특별 감사	재무	2020 회계연도 결산감사	일상감사팀	2~3
	특정	설계용역 보안관리 실태 특정감사	종합감사팀	5~6
		설계분야 스페셜리스트 운영실태 특정감사	종합감사팀	6~7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해소를 위한 컨설팅 감사	감사기획팀	6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업무실태 컨설팅 감사	감사기획팀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컨설팅 감사	감사기획팀	8
	성과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및 보안컨설팅 사업 성과감사	반부패감사팀	2
		오산열병합발전소 성과감사	종합감사팀	3~4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사업 성과감사	종합감사팀	8~9
	복무	공직기강 복무감사	종합감사팀	연중
종합/특별감사 (감사 특명 사항 및 수시 발생 건)			전팀	연중

※ 상기 감사 일정/항목은 긴급사항 발생 및 대외감사 수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지감사(종합/재무/특정/성과/복무)

구분	감사종류	연간계획(개)	실적(개)	처분요구 실적(건)													신분상 조치인원(명)			재무상 조치 금액(천원)
				총건수	변상	징계	사정	경고·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모범사례	한시조치	면책	징계	고발	경고·주의		
내부감사	종합감사	2	4	16	-	-	-	1	-	6	3	-	3	3	-	-	-	1	-	
	재무감사	3	4	36	-	-	5	-	5	9	9	-	-	8	-	-	-	-	1,330	
	특정감사	12	23	228	-	-	7	11	63	61	66	-	15	4	1	-	-	14	32,545	
	복무감사	1	9	19	-	1	-	5	1	3	2	-	-	7	-	1	-	176	-	
	성과감사	-	2	12	-	-	-	-	7	-	4	-	1	-	-	-	-	-	-	
	합계	18	42	311	-	1	12	17	76	79	84	-	19	22	1	1	-	191	33,875	
	일상감사	-	1,093	444	-	-	-	-	-	444	-	-	-	-	-	-	-	-	-	
외부감사	감사원	-	-	-	-	-	-	-	-	-	-	-	-	-	-	-	-	-		
	주무부처	-	3	4	-	-	-	2	1	-	1	-	-	-	-	-	-	-		
	기타	-	1	2	-	-	-	-	-	-	2	-	-	-	-	-	-	-		
	합계	-	4	6	-	-	-	2	1	-	3	-	-	-	-	-	-	-		